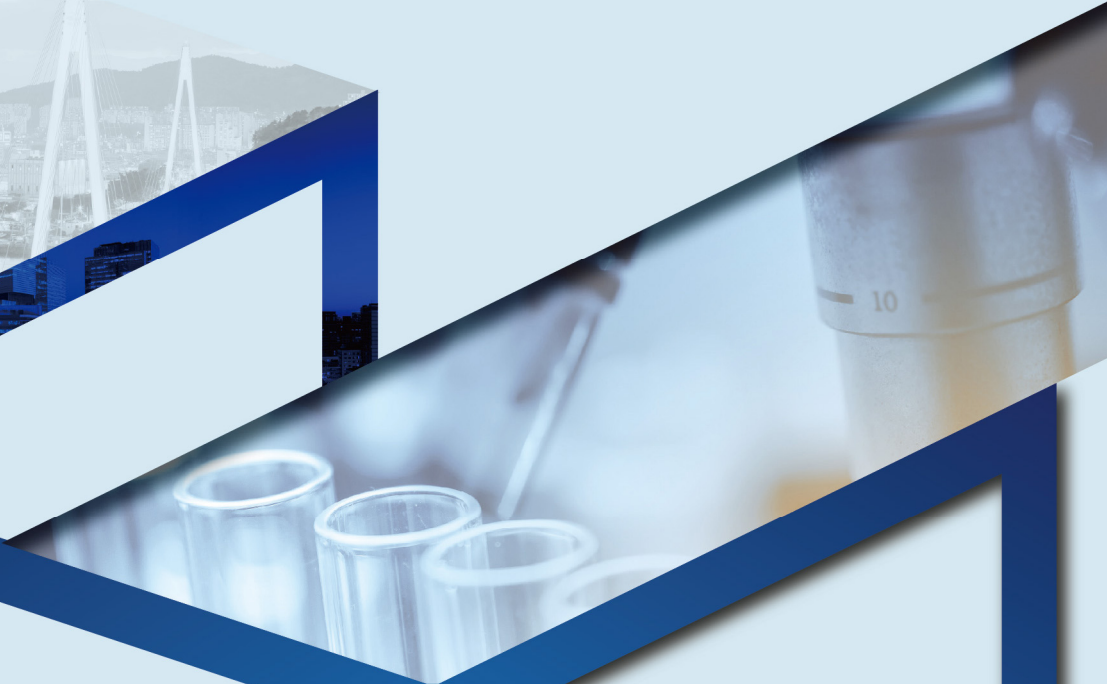




CRE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I

표절



Q 1. 논문 초록에도 인용표기를 하는지, 국가 보고서 통계자료 사용 시 인용표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 논문 초록의 연구배경 부분은 거의 관련 근거를 담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초록에도 인용표기를 해야 하는지요?
- 2) 국가 보고서의 통계 내용을 근거자료로 논문 작성 시 이에 대한 인용표기를 해야 하나요?

A 1) 논문의 초록 또한 표절의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초록이나 연구결과에서 그대로 인용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논문 초록의 특성에 대해서 잘 기술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논문의 초록이라는 것은 논문의 핵심내용을 가장 잘 축약된 형태로서 기술하는 것으로서, 개별 논문이 주장하는 바에 부합하도록 작성되기 마련입니다. 논문의 가치는 새로운 연구결과로서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개별적인 논문들은 각각 새로움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모든 논문 초록은 이런 새로운 연구결과로서의 핵심내용을 잘 요약하도록 기술되어야 합니다. 논문의 핵심내용이 다른데 논문의 초록이 동일할 수 없는 것처럼 연구의 배경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타인이나 자신의 이전 초록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동일한 연구배경을 가지더라도 자신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패러프레이징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동일 학문 분야에서 오랜기간 동안 알려져 공감대가 있는 부분은 인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자의 주관이나 고유한 아이디어 등이 수록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인용을 하여 표기함이 맞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의 초록은 기존의 학문적 공감대나 이론적 배경을 참고하되 저자 자신이 고유하게 표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축약된 문장과 분량에서 발생한 유사도는 논문 심사과정에서 감안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표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정부에서 연구 및 다양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데이터를 이용한 후속 연구는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야만 하는 핵심가치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통계자료의 인용범위입니다. 인용데이터의 범위는 최소화 하면서 해당 출처를 명확히 표기만 해주신다면 이로 인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라는 것은 새로움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공적 데이터를 정당한 방법 (인용) 일부 사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을 만 하다면 이를 제한해야 하는 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용법을 활용한 타인 혹은 공적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와 대비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로서의 가치가 희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이용이 아니라면, 기존 데이터를 꼭 필요한 만큼 재사용한 후속 연구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2. 책이나 학술지 등에서 기존의 기술적 방법을 인용할 때 표기방법이 궁금합니다.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기술적 방법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앞서 정의된 책이나 학술지 등에서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법의 정리가 총 8페이지 이내가 되어 짧게는 한 문단 길게는 반 페이지 정도 참고문헌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용표기를 어떻게 해야 표절이 되지 않나요?

A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5줄 이내로 인용 문구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5줄 이상의 분량을 그대로 따올 경우, 문단을 분리하여 기록하고, 각주를 달게 되어있습니다. 즉, 본문보다 작은 사이즈로 문단을 만들어 글자도 좀 작게 기록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선행연구에서의 기술적 방법 등을 문헌연구의 형태로서 논문을 작성할 경우 꼭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하며, 인용 분량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신규 연구결과로서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Q 3. A연구자가 만든 특허 등록된 연구 결과물을 재활용 시 인용표기 및 설명이 없이 논문을 투고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특허 공개 및 등록을 완료하였고, B기업에 기술이전도 완료하였습니다. 특허등록(공개) 이후 A연구자는 특허청구항에 제시되어 있는 도표나 그림을 그대로 이용하여 따로 인용표기 및 설명 없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A 특허정보의 인용과 관련해서는 학문 분야나 중복게재의 범위와 관련한 다소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로서 연구 업적의 사전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 또 독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특허정보 또한 수록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논문과 특허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인하여 학술 논문에 특허정보를 꼭 수록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견해 또한 존재합니다. 논문의 작성 스타일을 살펴보아도 특허정보의 기입 관련 예가 있는 스타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스타일도 존재합니다.

또한, 연구윤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특허정보를 수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복게재나 자기표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인의 특허를 인용 없이 사용했다면 당연히 표절에 포함될 것이지만, 자신의 특허를 인용하기가 꺼려져서 이를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다 완전하고 온전한 형태로써 발표해야 하며, 연구에 관련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사전 특허등록 정보를 논문 본문에서 소개하거나 참고문헌에 수록하여 연구결과를 접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Q 4. 2014년 “표절” 규정이 제정되기 전 2013년의 출판된 논문에 대한 표절 신고를 현재 어떤 규정에 맞춰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술지의 연구윤리 규정이 예를 들어 2014년에 처음 제정된 경우, 2013년에 출판된 학술지 게재논문에 대한 “표절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어떤 판정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규정의 제정 시 부칙 등으로 제정 시기 이전의 논문의 처리에 관한 내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혹 없더라도 해당 학술지의 방침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술지 규정 이전인 2008년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만들어졌고, 해당 규정을 대학, 학술단체 등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교육부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해당 학술지의 방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지만, 해당 지침 말고도 교육부 지침 등의 적용대상이 되며 해당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소속 기관의 지침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5. 두 명의 연구자가 공동 연구한 결과물을 같이 인용하여 각각의 논문을 게재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연구실 선배와 공동 주저자로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고, 연구실 선배가 먼저 졸업하면서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해당 논문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추후 후배의 학위논문에도 상당 부분의 내용 및 그림이 겹치게 될 경우,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단독이든 공동저자이든 이미 전문 학술지(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동료심사를 거쳐 논문을 출판함)에 공식 발표한 데이터나 연구 내용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학위논문이든 학술지 논문이든 앞서 발표된 논문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여 차별화가 있어야 본인의 연구가 학술적인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이미 학술 논문/학위논문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용된 부분마다 빠짐없이 그 ‘인용표시’와 ‘참고문헌’ 표시가 확실해야 하며, 2)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 작성 중인 학위논문에서 이미 발표한 학술 논문/학위논문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먼저 발표된 학술 논문/학위논문의 내용이 현재 작성 중인 학위논문의 내용과 상당히 큰 비중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중복출판’이 됩니다. 인용은 어디까지나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일부’만 하는 것이지, 학위논문 전체가 이전에 발표된 문헌들과 유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논문 구성을 다르게 하면서, 본인이 발굴하고 연구한 새로운 내용을 많이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Q 6. 인용표시 없이 감사의 글로만 표기한다면 표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재(영문법) 출판을 하면서 먼저 출판된 교재 내용 일부를 별도의 인용표시 없이 교재 '머리말'에 인용된 교재의 저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만 표기한다면 표절될 수 있나요?

A 자신의 단행본 또는 논문에 타인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구체적인 표현(단어, 문장, 문단)이나 표, 그림, 사진 등을 직접 인용할 때는 인용부호와 함께 페이지 등 정확하게 출처표시를 하고 원저자(또는 출판사 등 저작권을 소유한 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윤리문제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 있습니다. 단행본의 경우 종종 머리말 등에 포괄적으로 "이 저서를 발간함에 있어 OO에게 또는 OO저작물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본문에서 활용된 타인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어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원저자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연구자의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올바른 인용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의 일정 부분이 직접 인용된 경우, 감사의 글 등에서 포괄적으로 밝히는 것보다 인용부호와 함께 정확한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Q 7. "2008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국문 6어절 이상/영문 9어절 이상 일치하면 표절이라는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관련하여 자료가 궁금합니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에서 국문 6어절 이상 또는 영문 9어절 이상 일치하면 표절이라고 명시한 관련 지침, 또는 공문 등의 자료가 있나요?

A "국문 6어절 이상"이 연속 동일하면 표절로 판단한다는 것은 2008년 교육부가 수행한 "인문 사회과학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른 것이며, 많은 대학들이 여기에 따라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문 9어절 이상"으로 표절 기준을 삼는 것은 국내 C업체의 기준입니다. 반면에 해외업체 Turnitin은 "연속 6단어 이상"을 표절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속 5단어 이하"는 표절 검사에서 제외).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1) 논문의 성격에 따라 표절률이 높게 나와도 표절이 아닐 수 있고, 표절률이 낮게 나와도 표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가 직접 논문을 보고 최종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며, 2) 표절검사프로그램은 사용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주체)가 원하는 바에 따라 표절기준이 되는 단어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문장유사도는 표절을 규정짓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동일한 단어의 나열 전후로 연결되는 사상들이 기존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Q 8. 학위논문 작성 중 자신의 연구 주제와 비슷한 연구 주제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면, 이것은 표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H는 학위논문을 준비하여 논문을 작성하려던 중 계획하고 있는 연구 주제와 비슷한 연구 주제가 이미 다른 학교 학위논문으로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 간 비슷한 점은 있지만, 연구 가설의 방향이 반대되고, 연구 가설을 이끌어내는 이론적 배경 역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연구 주제가 거의 같다는 점에서 이것이 아이디어 표절에 해당하나요?

A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말이 새삼스레 와 닿는 순간일 겁니다. 가설 또는 실험의 방법론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학위논문의 자격과 가치가 없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가설과 실험방법으로 낸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만, 이전 연구에서 착상을 얻거나 그에 기반을 두어 연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그들과 차별화된 무언가를 확실히 부각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방법론과 데이터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한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발표된 연구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도, 비슷한 연구를 통해 과거의 연구가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연구를 통해 과거의 연구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더 나은 결론과 연구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좋은 연구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과거의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자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타인의 이전 논문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올바르게 정직한 인용표시를 정확하게 하기 바랍니다. 이는 먼저 가설을 내고, 해당 이론을 만들어내려 노력하였으며, 선도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다른 연구자와 그 저작물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표시하는 연구자의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Q 9. 내주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내주를 표시할 때, 보통 (저자명, 출판연도 : 인용 면수)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과 내주 참고문헌의 경우 정기간행물이면 논문제목(2000.10.10)~ 연월까지 표기하는 게 허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주도 정기간행물이나 인터넷 기사일 경우 연월까지 써도 되나요?

A 내주 표시방법은 (저자명, 출판연도 : 인용 면수)가 맞습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보통 월 단위로 발행되므로 연월까지 쓰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기사는 하루 단위로 발행되므로 ‘일’까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자료의 경우, 인터넷 자료 본문 안에 정확한 날짜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를 써야 합니다. 연도 또는 월까지만 표시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연도 또는 월까지만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자료 안에 날짜를 짐작할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다면 주석에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표시하고 싶어도 표시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인터넷 자료를 확인한 날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자료는 홈페이지 이전, 폐쇄,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빈번하게 사라질 수가 있으므로 “내가 확인한 날짜”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Q 10. 개발된 연구 도구를 원저자에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개발된 연구 도구의 원저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또는, 연구 도구집 등 출판된 도구나 공개된 도구에 관해서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먼저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된 연구 도구”가 이공계 분야의 실험절차와 방법 인지, 인문사회계 분야의 설문조사인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공계 분야의 실험절차와 방법이라면 특허 출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특허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 가능). 만약 인문사회계의 설문조사 문항이라면, 타인이 공동으로 만든 그 문항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하면 표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이 제작한 설문조사 문항을 가져다 쓰고 싶을 때는 원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저자가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이 아니거나, 소재지를 전혀 알 수 없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이라면 원문의 출처를 정확히 밝힌다는 조건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도구집’ 등 공개된 형태의 연구 도구는 ‘연구 도구집’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발행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Q 11. 인용할 논문 앞면에 명시된 “배포 금지” 관련 문구가 있다면 저자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논문의 앞면에 “저자의 동의 없이 인용 및 배포를 금한다(No Quotation or Dissemination without Author’s Permission)”라 되어있습니다. 연구윤리를 지키는데도 저자의 동의를 위해 연락을 꼭 해야 하나요?

A 학술 논문의 기본적인 취지를 고려했을 때 승인 없는 사용을 금하도록 설정해 두었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작물에 대한 저자의 권리는 사실상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창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CCL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자가 본인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고 명시하였다면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원저자와 이를 인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시대적 물리적 거리가 커서 사실상 승인을 받을 수가 없거나, 그것이 하나의 이론처럼 일반화 되어버린 경우에는 바람직한 인용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12 저널에 게재되지 않는 워킹페이퍼를 인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학술 저널에 게재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에 등록된 워킹페이퍼(저널 게재가 되지 않은 상태, 공저자 존재)를 인용 또는 편저해서 학위논문을 작성할 경우 일반 참고문헌과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A 일단 문서화된 모든 저작물(외부에 발표가 되든 안 되든)은 모두 저작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자료는 적절한 인용절차를 거쳐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게재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 등록된 워킹페이퍼” 라는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공개되며 정확히 어떤 성격의 글인지 정확히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범주 안에서 말씀드리면, 인용 또는 편저를 통해 또 다른 글을 작성할 경우 인용 방법은 워킹페이퍼라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저자, 발행연도, 글 제목, 발행기관(기관지명), 권·호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워킹페이퍼”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해설서>(페이지 158~177)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cre.or.kr/board/?board=textbook&no=1386453>

참고로, 1) 단순 인용일 경우 저자든 저자가 아니든 인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충실히 인용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2) 단순 인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예를 들어, 문단 이상을 넘어서는 범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당 워킹페이퍼의 발행인(발행기관) 및 저자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접 인용함을 나타내는 방식 (예 : 별도의 단락을 만들어 작은 크기의 문단으로 표시)을 통해 인용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얻었더라도 각주와 참고문헌 표기는 반드시 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Q 13. 연구용역 기관의 표절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용역 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에 대한 연구부정행위(표절 등)를 발견하였을 때 연구 업체에 가할 수 있는 법적 제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제재 수준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있나요?

A “연구윤리”는 이름 그대로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할 “윤리”를 고양하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가의 문제를 파악하는 기구이며, 그에 대한 후속 제재 절차는 하지 않습니다. 대학 등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소속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 기타 관련법(예 : 김영란법), 공무원 복무 규정, 품위 유지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행법(특히 형법 및 형사 관련 특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검찰과 법원이 사법적으로 처리할 일이 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제재 조치로서 참고하실만한 것은 “과학기술기본법”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 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중간생략〉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 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Q 14 타인이 자신의 논문 일부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논문 출판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연구원이 2014년 경 국내 KCI등재지 중 한 곳에 출판한 논문이 2019년 올해 제 논문의 고찰 부분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여 외국의 SCI급 저널에 출판한 논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논문을 일대일 비교한 결과, 서론 부분의 상당수 그리도 고찰의 대부분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윤리적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A 본 센터는 교육정보 제공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직접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1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이기 때문입니다.

- 1) 본인의 연구논문이 타인에 의해 표절되었음이 의심된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해당 논문이 출판된 학회 또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구부정행위는 본인의 피해가 아니어도, 또는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라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그 논문의 저자가 당시에 소속된 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우선적으로 검증 책임을 갖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90% 이상)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 지침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지만, 익명제보도 가능합니다. 단, 제보는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증거(표절의 경우에는 원문과의 비교 부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제보라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은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지침 제19조 1항),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고 판정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지침 제24조 2항). 판정 결과에 따라 논문 수정, 논문 철회, 저자 징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제보자가 이 조사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지침 제25조),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 등 상위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지침 제28조), 최종적으로는 사법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Q 15.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통과하기 위한 표절 유사도 검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요즘 많은 이슈가 있는 표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 유사도 검사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표절 유사도 검사 기준에 대해 알 수 있나요?

A 아마도 '표절'에 적발되지 않고, 논문이 통과될 수 있는 기준을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 표절의 기준은 숫자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학문 분야에 따라 원문을 많이 인용하는 분야가 있고, 적게 인용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문을 아주 적게 인용했다라도 핵심적인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으로 인용했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절의 기준을 단지 유사율 '%'로써 일괄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고, 1차적으로는 대학이나 학회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며, 2차적으로는 유사율 '%'가 높게 나오더라도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예 : 원문 인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연구, 학계에서 일반적 지식(common knowledge)으로 통용되는 부분 등)를 전문가들이 직접 판정해야 합니다.

Q 16. 두 학회 간의 표절을 확인하였을 때, 표절한 논문을 게재한 학회에 어떤 처벌 및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학회에서 2018년 발간됐던 논문 중 한편을 B학회에서 2019년에 발간된 논문 중 한편에 3개의 단락과 1개의 그림을 각주 없이 사용했음(A학회의 논문 저자가 직접 쓰고 그림도 만들고 했던 내용이라서 분명히 표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재단에 문의 결과 이와 관련된 처벌 규칙은 없으며, 학회 자체 회의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타 학회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나요?

A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1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 B가 속한 B학회, 그리고 연구자 B가 속한 대학 등에 1차적인 검증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A학회는 표절 관련 증거를 B학회 및 연구자 B가 속한 대학 등에 “제보”하고, 구체적인 조사와 판정은 B학회 및 연구자 B의 소속대학이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 판정 결과에 따라 B학회 및 연구자 B의 소속대학은 논문 철회 및 그에 합당한 제재(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지침 제26조). 이때 “징계”는 각 기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A학회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자인 연구자 A와 A학회는, B학회 및 연구자 B의 소속 대학이 내리는 판정이나 논문 철회 조치, 그에 따르는 제재 조치 등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지침 제25조에 따라 B학회 및 연구자 B의 소속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여전히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지침 제2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A와 A학회는 “제보자”의 권리로서, 지침 제14조 6항에 따라 조사기관(여기서는 B학회 및 연구자 B의 소속 대학)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B학회 및 연구자 B의 소속대학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 제2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17. 자료집 제작 중 원저자의 자료를 수정·보안하게 될 경우 원저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궁금합니다.

공공 기관에서 자료집(매뉴얼)을 개발하던 중 자료를 찾아서 출처를 기입하고자 할 때 1차 자료에서 약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발췌 후 수정이라는 표현을 종종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자료(책에 있는 표, 홈페이지 자료 등)에서 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 출처를 작성한 후에 (저자 및 책 제목, 홈페이지 주소 등) 발췌 후 수정을 작성한 후에 원저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A**
- 1) 예, 원저작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쓸 때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쓴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인용자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원저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혹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원저작자는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임의적으로 변형 내지 수정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2) 추가로, 만약 사용하려는 자료가 '무단 복제 금지'가 표기된 자료일 경우
 - ① 정당한 절차를 밟아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 허가를 받고,
 - ② 2차 저작물에 정확하게 인용출처를 표시하며,
 - ③ 이에 상응하는 저작권료를 납부한다면 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고서를 발췌 이용하려는 기관에서는 2차 저작물을 제작할 때 원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용 범위(누구를 대상으로, 몇 부나 인쇄하여 배포할 것인가),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 절차와 적정한 금액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2차 이용기관이 유상으로 배포하든 무상으로 배포하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든 상관없이, 원저작 기관은 배포 범위를 제한할 권리와 저작권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Q 18. 참고문헌의 표기가 해당 논문의 본문에 사용 확인이 불가하다면, 이것은 연구부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논문 본문에는 따로 인용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실제로 해당 참고문헌에 기재된 참고문헌이 해당 논문의 본문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은 연구부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A

정확하게 해당 논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논문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한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내용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고문헌에 그 구체적인 서지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논문에서 인용하지 않은 논문을 참고문헌에 한, 두 개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연구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 연구자가 읽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을 과장하여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로 인용한 참고문헌만을 참고문헌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문헌에 있으나 논문 본문에서 별도로 인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것도 연구부정행위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연구자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원저작자의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니 실제로 인용된 부분도 연구자의 것으로 오해케 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잘못이 없도록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출처표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 서지정보 오류 또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논문에 인용표시를 하고 잘못된 서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면 심각한 경우 표절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인용과 그에 따른 서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19. 대학원 석사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되는 경우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유명인들의 잇따른 석사 및 박사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될수 있다.”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기정사실화되어 학위가 취소되면 이들의 최종적인 학력은 해당 전공의 수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A 1) 교육부훈령 제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고 발표할 당시의 소속기관에 있습니다. 이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실효성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위논문의 경우 해당 학위논문의 승인 과정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고유의 권한으로서 승인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학위논문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역시 해당 대학만이 가집니다.

2) 연구부정행위 검증에도 위의 지침에 따른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판정, 그리고 그 사안의 당사자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조치 등은 제보자, 피조사자, 상위 감독 기관(교육부) 등에게만 알릴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알릴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오히려 해당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조사자가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검증 과정에서의 절차를 어기거나 피조사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정사실화’라는 검증되지 않은 기사에 최종 학력에 대한 추측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학원 수료’는 석사 및 박사과정에 필요한 졸업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 자격시험과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대학원 졸업’은 대학원 수료를 마치고 학위논문까지 통과한 후 학위 수여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학위논문에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대학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며, 학위 취소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상 논문을 써 학위를 받았을 때 해당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위 취소가 되면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당연히 졸업을 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을 이수한 것으로 학위논문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수료 상태에 머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 관련하여서는 최종 결정 권한은 해당 대학(원)에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것은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정보센터

Center for Reserach Ethics Information